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

2021. 6.17 (목) 14:00

온라인 (Zoom)
회의 ID: 847 7561 2801

주최 국회의원 이종성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토론회 순서

◆ 인사	
14:00 - 14:04	개회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14:04 - 14:08	환영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14:08 - 14:09	영상 축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제 발표	
14:10 - 14:35	발제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조윤주 교수 | 서정대학교
14:35 - 14:40	휴식 / 장내정리
◆ 패널 토론 (좌장 : 함태성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	
14:40 - 14:52	토론 1.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14:52 - 15:04	토론 2.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
15:04 - 15:16	토론 3.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등록제 실태 문해경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장
15:16 - 15:28	토론 4. 동물등록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15:28 - 15:40	토론 5. 동물등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15:40 - 16:10	자유토론
16:10	정리/폐식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활동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아 주신, 서정대학교 조윤주 교수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님, 패널로 참석해주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국장님,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님, 서울시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 문해경 팀장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를 위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견의 경우 6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등록된 수는 232만마리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물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동물등록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유기동물 역시 매해 증가해, 구조된 동물만 무려 1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된 유기동물 수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유기동물 수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기동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등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동물등록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키고,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사인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언론, 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들과 논의들이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국회의원 이 종 성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시고 우리사회의 약자인 동물을 위해 직접 등록제를 정비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이종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를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되어 이듬해인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행으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며 등록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인증제도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최근 등록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 등록대상동물 중 40%정도만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동물이던 반려동물이 파양되어 영업장으로 양도된다면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 해당 동물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며,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법의 허점 속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만 10만 마리를 뛰어 넘은지 오래고, 음지에서 학대당하는 동물의 수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제도와 운영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 단순히 등록동물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정비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학계, 산업계, 동물운동단체, 시민까지 이해관계자가 각각의 관점에 동물등록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번의 토론회로 완벽한 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동물들의 삶을 개선하는 동물등록제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 되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종성 의원님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발제자와 토론의 좌장,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먼저,'유기동물 10만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이종성 의원님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보다 높아졌지만, 키우던 동물을 유기·유실하거나 관리 및 교육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이 13만 마리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주인에게 다시 인도된 경우는 11%에 그쳤고, 절반가량은 자연사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했지만, 2017년 기준 동물등록률은 27%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7년간 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고작 415건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의 동물등록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 반려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아리‘펫밀리’와 국회의원연구단체인‘동물복지국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으로 함께해주신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조윤주 서정대학교 교수님,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님,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님, 문해경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장님,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님,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기 현

[축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종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학계와 관련 전문가, 유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책임져야 할 견주를 찾지 못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동물등록제를 개선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막고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기대가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주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등록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232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 방식을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4천여 개 펫숍 등 동물판매업체에서는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올해 7~9월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캠페인과 민관 합동 전국 현장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려견에만 한정된 등록대상동물을 점차 확대하고, 코주름과 같은 동물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방식도 개발하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반려동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현 수

목 차

발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조윤주 서정대학교 교수

토론

01.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02.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

03.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등록제 실태
문해경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장

04. 현 동물등록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05. 동물등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발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조윤주 서정대학교 교수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2008년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실·유기 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당시에는 내장형,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총 세 가지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20년 인식표는 등록방식에서 제외되었다.

반려동물 등록은 소유자의 의무이자 법적 요구사항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반려동물 등록을 registration으로 표기하고 미국은 licence라고 표기한다. 단어 선택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대상 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체내 삽입하고, 목줄에 연결하는 인식표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1]한다. 동물등록은 매년 갱신하거나 평생 회비를 지불하며 등록비 수입은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미국은 광견병 백신 접종과 동물등록의 갱신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해마다 광견병 백신 태그를 모양과 색을 지정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여전히 탈부착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가 등록방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개체식별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
2) 일회성 등록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부족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식표의 부착)에서 기록사항(소유자 이름, 소유자 연락차) 중 '동물등록번호는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라고 되어있는 모순
4) 일상생활 중 동물등록의 필요성 또는 제한 사항 등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그림 1. 광견병 백신 태그 (ketchummfg.com)

1) 동물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색으로 구분함 (2020/2021 파란색, 2021/2022 빨간색) 매년 7월 1일 등록, 7월 31일이 이후 연체료(50%) 부과 (marlborough.govt.nz)

표 1. 나라별 반려견 등록방식의 예

	중성화되지 않은 개	중성화된 개	사전교육 통과 시	비고
뉴질랜드 웰링턴	$176	$127.5	$62.75	매년 갱신
호주 캔버라	$424	$57.55 (평생회비)		매년 온라인 보고
호주 시드니	$80	$60 (평생회비)		6개월령까지 등록
미국 뉴욕	$34 (>4개월령)	$8.5		

① 등록대상 동물에 고양이 포함

반려고양이의 유실, 유기를 막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로 고양이를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서울시 중구, 경기도 용인 등을 포함하여 17개 지자체에서 시작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서울, 경기 전 지역을 포함하여 13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국가적으로 생물종다양성을 중시하는 나라는 고양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호주 캔버라는 ACT cat plan 2021-2031을 발표하며, 반려고양이가 실외에 배회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양육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고양이의 등록을 중요시하고, 반면에 야생고양이(feral cat)로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시행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의 지역에서 고양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물보호단체(Alley cat allies) 중에서 고양이 등록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곳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고양이 등록 의무화는 이것을 홍보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등록비를 갱신하여 청구함에도 수익은 고양이 등록과 관련한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반려고양이 사육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고양이의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등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고양이의 수를 줄이고 길에서 배회하는 고양이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고양이 등록을 시행했다가 등록세 수입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법률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고양이 등록의 취지가 반려 고양이의 유실, 유기 급증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동물등록의 의무화가 유실, 유기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을 현재 반려견 등록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통해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②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 확대는 더 나은 동물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많은 보호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보호자가 반려동물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의 중성화 수술까지 수행한 경우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 인정하고 동물등록비용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데 혜택을 줄 것인지 강제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③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 제한

동물은 법률상 재물로 취급되고 있으나, 현재 비물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구조·보호동물은 유실물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치료·보호하더라도 보호조치 기간 이후 보호 비용을 내면 동물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판단근거도 행위 자체에 두고 있어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학대 행위가 아니라면 동물이 고통을 받더라도 학대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상주에서 개를 차 트렁크에 묶어서 달렸던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개를 운동시키려고 트렁크에 묶어서 천천히 달리다가 이를 잊은 채 시속 60km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차를 트렁크에 묶어서 동물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을 시키는 행위가 학대인지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비슷한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동물 학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이고, 더욱이 동물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국내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 조항이 매년 늘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동물 학대(abuse)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학대자의 고통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동물 학대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반영되어야만 학대(cruelty)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학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다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제한을 두는 첫걸음도 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④ 사인 간 동물의 분양 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사인 간 동물분양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중성화 수술에 대한 권고를 통해 최대한 번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 미국 동물보호소에 사육 포기하는 사례 중 83% 이상이 무료로 얻은 개이며, 지인이나 이웃을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경우는 63.6%가 1년 이내에 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인 간 동물분양은 지양하고 우수 동물생산업, 판매업을 통해 분양하거나 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의 반려동물 분양에서 '가정견 분양'이라는 단어가 '번식장'보다 동물복지에 가까운 생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인 간 동물분양을 둔갑한 무등록 생산업이 존재하게 된다. 가정에서 번식되는 동물을 생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지도·감독에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호주 시드니의 경우 6개월 이후에 개를 중성화 수술한 경우 등록비가 $216인 반면 그 이전에 수술한 경우는 $60이다. 고양이는 4개월령 이후에 중성화한 경우는 등록비 $50 외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중성화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매년 $80에 해당하는 허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이 6개월령까지 완료되면 되지만,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동물생산업

- 4마리 이상의 암캐, 상업적 판매를 할 경우

영국 동물생산업

- 3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생산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마리 이상 판매(이익추구)한 경우 동물생산업자로서 등록
- 등급제도 도입(5점)
  동물의 복지 수준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3년 장기 등록, 등록비용 절감
  등급이 낮을 경우: 1년 단기 등록, 등록비용 고가, 잦은 지도·감독
- 개의 판매 광고 : 면허번호, 발급지역, 개의 사진/나이 (8주령 이상)

2) Arkow, P., & Dow, S. (1984). The ties that do not bind: A study of the human animal bonds that fail. In The Pet Connection: Its influence on our health and quality of life (R.K. Anderson, B. L Hart, L. L. Hart, editor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pp. 348-354.

⑤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자는 번식동물의 등록을 통해 개체 관리를 해야 하고, 태어난 자견과 자묘는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면 동물등록의 보편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호주는 반려동물 판매 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반려동물의 이력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국내의 경우 동물생산업자 단계에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로칩의 체내 삽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칩 삽입은 수의사가 해야 하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⑥ 정리하며

동물등록제가 미국에서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무분별하게 개를 구조·포획하여 동물보호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례를 막기 반려견에게 영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개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세금도 징수하고, 세금의 차이를 두어 중성화와 사전교육을 유도하고, 광견병과 같은 공중보건관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등록 시기가 3개월에서 2개월령으로 앞당겨졌다. 개체 등록에 대한 확고한 정책 아래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동물 관리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토론 ①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 경 구

1. 동물등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 마련 필요 (동물등록제도 강화방안)

기존 등록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제도 고유의 목적인 유기 · 유실방지 실현 가능

■ 광역 위치추적 시스템

- 경기도 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 지원(1차) 선정
- 중소기업 관련 특허 이전사업자로 선정되어 삼성전자3건, SK텔레콤 1건, SK플레닛1건 이전 완료!

■ 반려동물 인공지능(AI) 안면인식 을 통한 품종 자동분류

- 중소기업벤쳐부 창업 성장 기술과제 선정
- 정보통신사업진흥원 K-GLOBAL PROJECT 주관
- 반려동물 분야 K-GLOBAL ICT 창업맨토링 사업자 최종선정
-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기업부문 선정

★ 기술개발 완성도는 현재 80% 이상으로 年內 상용화 가능!

■ 반려동물 품종 자동분류 및 광역 위치추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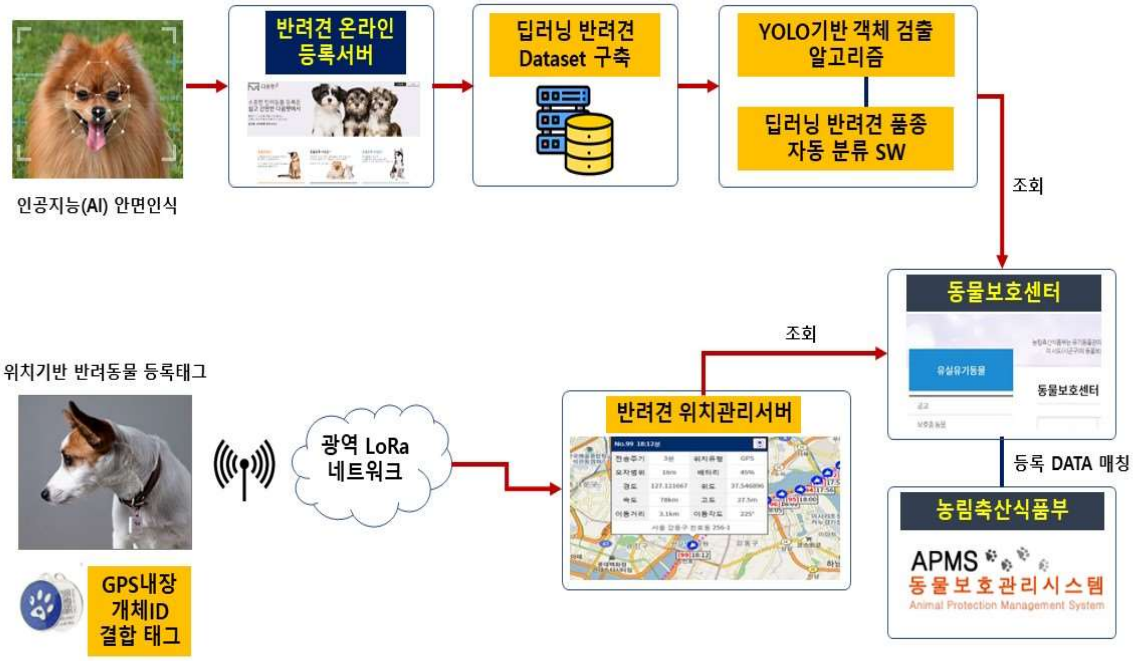

■ 반려동물 인공지능(AI) 안면인식

내장형/외장형 칩
RFID리더기 필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animal.go.kr

접속하여 무선식별번호 입력 및 검색
번거로움과 찾기의 어려움 존재

한계점

- 반려견에 대한 단순 정보등록 기능
  - ① 개체(동물)인식 및 식별의 어려움
  - ② 유기·유실견에 대한 실시간 대처기능 부재

유기견 발견시

이미지·동영상
촬영 및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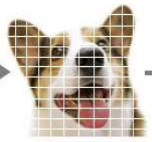

이미지 변환
특징 요소(눈,코,입) 분할
- 품종, 눈,코,입,털의 유무,연령
- 얼굴ID정보 DB저장

얼굴 분류
딥러닝 학습
- 얼굴 정보 DB저장 및 매칭

대용량이미지 관리
암호화 통신

개발 솔루션

- 국내최초 동물 인식 및 등록 체계 구축
- 유기·유실견 사회적 관리 비용 감소
- 반려동물 데이터셋 확보

■ 반려동물 광역 위치추적시스템

2. 고양이 동물등록 건

- 고양이는 개와 달리 체내에 칩을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식의 외장칩을 다는 경우 피부 트러블 발생은 물론 지극히 예민한 고양이과의 특성상 상처 유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기존 내 · 외장칩이 아닌 분실이나 파손의 우려가 없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방법을 통한 등록절차 신설이 필요

3.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 자칫 궁극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동물보호단체의 홍보 창구나 일방적으로 분양대신 유기동물 입양만을 권유하는 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안 마련부터 실행까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산업계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분양前 사전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반려견 · 반려묘를 키우기 시작 한 이후 처하게되는 어려움을 케어해주고, 특이점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너무 경직화된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는 반려동물 산업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영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 출생동물 등록 의무화 논리라면, 법적 판매일령이 출생 후 2개월임을 감안해 볼 때, 2개월 전에 내장형 칩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건강적인 리스크가 너무도 큼

- 생산업 · 경매업 · 판매업 전 단계에 걸쳐 시행중인 개체관리카드 작성 제출의무와 분양前 동물등록 의무라는 현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됨

5.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건

- 현재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침습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분양前 동물등록이라는 새로운 법적의무가 모든 동물판매업자에게 부과된 현실에서 이는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 별도의 교육절차를 거쳐 동물판매업자도 내장형 칩을 시술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에만 지급되고 있는 등록비 보조금이 똑같은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합니다.

토론 ②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

1. 동물등록 현황과 개선에 대한 의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마릿수는 23만 5,637마리다. 2020년까지 등록된 총 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였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반려견이 602만 마리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등록비율은 38.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7만7,952마리)로 신규 동물등록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8.9%, 4만4,721마리), 인천(5.8%, 1만3,817마리) 등의 순이었고, 신규 동물등록이 가장 적었던 지자체는 세종(1,388마리, 0.5%)이다. 누계로 보면 경기 29.3% 〉서울 19.3% 〉부산 7.0% 〉인천 6.7% 순이며 제주(1.7%), 세종(0.4%), 울산(2.0%) 등 2% 안팎 수준이다.

▶ 지역별 비율이 아니라 지역 내 등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역별 비율만 봐도 지방의 경우 등록비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됨. 떠돌이개, 마당개가 많은 지방 지역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봄.

▶ 농림부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의 79.5%가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아직도 10명 중 2명이 모르는 상황. 이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방이나 노인층 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정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2.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 ① 의무등록대상 반려동물 확대(고양이), ②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③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④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함.

- 특히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포함해 반려견 양육과 관련 사람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사전교육은 필요하다고 봄. 농림부 조사결과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를 차지했고 반려동물 소유자 중에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3.8%로 전년(62.6%)보다 상승한 점에 주목.

- 반면 사인 간 동물의 분양 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는 꼭 필요한지 의문임. 굳이 동물판매업을 거치지 않아도 온라인 포함 모든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등록을 의무화하게 하고, 등록여부는 동물병원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 다른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3. 등록도 좋지만 사후 관리의 필요성

- 최근 논란이 된 사건 모두 동물등록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지난달 22일 경기 남양주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개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험한 개 기질(공격성)평가 제도 도입과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보호자를 찾고 있는데 동물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해당 개농장에서 내장칩이 있는 보더콜리가 발견됐는데, 보호자가 바뀌었지만,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 개가 보호소를 거쳐 개농장에 올 때까지 칩 확인을 확인하지 않아 원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보호소 입소 시 내장칩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호자가 바뀔 때도 내장칩 정보를 반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실제 개농장에 있는 개들 가운데 내장칩이 있는 경우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결국 등록을 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봄.

- 또 하나의 사건은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결국 로드킬을 당한 채 발견된 반려견 '랑랑이'다. 문제는 시민의 블랙박스 제보로 로드킬 사실을 알았고 사체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장칩을 확인하는 절차 등은 없다. 때문에 자신의 반려동물이 로드킬을 당해 처리가 되어도 정작 보호자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동물등록을 했어도 로드킬을 당했을 때 동물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기사를 찾아보니 관련 뉴스가 수년째 해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 환경부에 질의하니 도로별로 사체처리 주체가 다르고 또 해당 직원들에게 리더기를 배포해 확인하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함. 다만 농림부가 환경부에 제안한 대로 반려동물일 경우 지자체 보호소에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토론 ③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등록제 실태

문해경 성동구 반려동물정책팀장

현장에서 마주한 동물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물등록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시 도입되어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단계적으로 시행지역을 확장해 2014년 7월부터는 등록대행기관이 없거나 도서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이후 '강아지 공장'사건 등으로 동물등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7년 등록연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물등록제의 입법취지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이 넘는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되지 않은 현실은 등록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이번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동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주했던 현실을 바탕으로 이종성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의무등록대상 반려동물 확대(고양이)

② 반려동물 등록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③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④ 사인 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⑤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2. 주요 개정 내용별 의견

① 의무등록대상 반려동물 확대

- (필요성) 최근 국내 반려묘 가구 수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묘 양육 가구수는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25.7%에 달할 정도이다.

  반려묘 가구의 증가만큼 유실·유기되는 고양이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2016년 24,607건이었던 고양이 유실·유기는 2020년 32,770건으로 2016년 대비 33.2% 증가했다. 고양이의 경우 개와 그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이 다르고 길고양이와의 구분이 안

돼 유기동물 여부를 인지하거나 유실동물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고양이 역시 동물등록대상에 포함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에 비해서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으나 호주와 일본에서 고양이를 의무등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EU 내에서는 프랑스, 스페인(일부 주) 등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되는 추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고양이 외에도 패럿도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해 동물등록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보완사항)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등록의무대상으로 포함했을 때 현장에서 여러 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길고양이는 주변에서 적극적인 돌봄활동을 제공받고 있는데, 일명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 사건' 등에서는 돌보는 이들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 및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의무 부여 자체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고민하고 기준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반려동물 등록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 (필요성)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다른 무엇보다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기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가정 내 혹은 이웃과의 갈등 혹은 사료, 간식, 물품뿐 아니라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의 발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채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자칫 유기나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전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행동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보완사항) 다만 사전교육을 누가 제공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시행초기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가 가능하도

록 운영할 수 있으나 이역시 교육 내용과 방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③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 (필요성) 아무리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동물을 데려와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동물보호법의 맹점으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 했다. 다행히 올해 법무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추진하고 있어 소유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입법례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을 제한해 또다시 키우는 상황을 막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판단된다.
- (보완사항) 동물학대자라 하더라도 그 제한에 있어 범죄의 경중, 재발 가능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록제한뿐 아니라 동물학대 판결시 소유권 제한 등의 내용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을 가벼이 여겼을 때는 선의의 반려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못 하므로 그 판단을 법원을 통해서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④ 사인 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 (필요성) 해당 개정안은 등록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사인 간 동물분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의 중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입양경로에서 지인간 거래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사인간 거래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 (보완 필요성) 그러나 동물판매업의 중개를 거치게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인간 거래시 판매업 경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인간 거래되는 동물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시설 이용을 등록동물로 제한하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⑤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 (필요성)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1만 9,285개소, 종사자 약 2만 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 이중 동물생산업과 판매업만 하더라도 6,111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업소에서 태어나고 판매되는 동물들이 판매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 등으로 반환되거나, 생산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공아지공장 사건'의 불법번식장이 현재도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관련영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토론 ④

현 동물등록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현 동물등록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한혁

2021.06.17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1. 동물등록제 개관

동물자유연대

- 동물등록제 도입 목적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기,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 제도의 주요 내용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유실·유기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등록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도의 조례 준용

- 시행시기

  2008년 1월 27일 시행. 2013년 10만 이상 전국 시군지역(142개), 2014년7월부터는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 및 일부도서 제외 전국 시군지역(225개)으로 확대 실시

2. 현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자유연대

- 등록이후 관리 부재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등록사항 변동신고는 동물의 신변 변화를 확인하고 실제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단도 마땅치 않음

2. 현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자유연대

- 등록여부 확인 제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국내 483만 가구에서 평균 1.2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반려견 수를 약 580만 마리 정도로 추산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견 누적 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에 불과
  - 유실·유기되거나 죽은 후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을 한다면 등록률은 40% 미만, 미등록 동물은 3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
  - 반면 2020년 동물 미등록으로 적발된 사례는 149건에 불과
  - 추정되는 미등록 동물에 비해 적발사례가 극히 적은 것은 단속에 나선다 할지라도 등록여부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됨

2. 현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자유연대

- 등록대상 제한
  - 현재 의무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고양이의 경우 2018년 1월 15일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해당지역의 반려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 가능)
  - 현장에서는 '반려 목적'의 기준에 대한 혼선 초래(예 : 수렵목적, 경비목적 등)
  - 동일한 개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누가 돌보느냐에 따라 등록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짐
    현재 법의 해석에 따르면 소유주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개농장주 등에게 양도해 개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사육할 경우 동일한 개체임에도 등록 의무 부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양동물 이용 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이 역시 등록 의무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라는 등록제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 초래

2. 현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자유연대

- 2018년 6월 - 서울 관악구 소재 펫샵(폐업상태)
  건물주와의 권리금 협상을 위해 폐업한 업소 내 5마리 강아지 방치(1마리는 이후 판매). 물과 사료는 공급하고 있었으나 분변 등을 처리 하지 않아 피부병 발생

2. 현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자유연대

- 2019년 6월 - 서울 강북구 소재 펫샵(폐업예정)

  폐업을 앞두고 강아지 8마리를 방치. 피부병, 외이염, 치주염, 기생충 등 확인

2. 현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동물자유연대

- 양육 부적합자의 분양/입양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5년 283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크게 증가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크게 느는 동물학대자와 같이 반려동물 양육 부적합자의 동물 분양 및 입양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
  - 2019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동네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와 자신이 분양 받은 새끼 고양이를 연달아 죽인 사건 발생. 학대자는 사건 후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
  - 잔혹한 동물학대를 행한 자라 할지라도 동물을 키우는 데 어떠한 제재도 없는 실정

3.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 등록갱신제 도입
  -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주 또는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죽음, 유실/유기와 같은 중대한 변동사항 발생시 가급적 빠르게 신고 해야 함
  - 또 소유주가 변동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장치 필요
  - 등록갱신제의 경우 매년 혹은 정해진 기간 마다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동물의 소유권 이전 및 죽음, 유실 등의 상황 발생시 신고에 대한 유인기제로 작용 가능
  -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나라에서 등록갱신제 시행 중
    호주는 매년 4월10일까지, 뉴질랜드는 매년 7월1일까지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라이선스를 갱신토록 함

3.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 공인 인식표 발급
  - 외국의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인식표(lisence tag)를 교부받아 외출시 착용하도록 규정
  - 국내에서는 외출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지 않고 개인이 구매
  - 인식표의 형태 등이 서로 상이해 등록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공인된 형태의 인식표 발급 및 착용 필요
  - 인식표 지자체 발급에 대한 검토 필요(단, 인력이 투입 등에 대한 효율성 검토 필요)

3.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 등록대상 동물 확대
  -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 등록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록 예외 조항에 대한 정비 필요
  - 등록대상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혼선을 해결해야 함
  - 특히 영업에 이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등록 필요
  - 생산/판매업자의 폐업 또는 판매가 안 되는 동물에 대한 처리 불투명.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후 관리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에서 판매되는 9주 이상의 모든 개는 판매전 등록 요구
    생산업자 → 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 → 수분양자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업자나 개인에게 등록 이전

3. 개선방향

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 및 등록 제한
  - 외국에는 이미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입법례 다수 존재
  - 노르웨이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특정 기간 혹은 영구히 동물을 소유나 보유, 사용, 도살, 돌보는 일, 사냥과 낚시의 권리 박탈 가능. 판결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 혹은 모든 권리의 박탈
  - 영국은 동물학대로 유죄가 확정시 그 범죄와 연관된 동물의 소유주라면 판결 전 혹은 그 때까지(시기를 말함) 법원이 그 동물의 소유와 처리에 대한 권한을 빼앗을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피학대 동물을 몰수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모든 동물 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하거나 매매 또는 그 밖의 동물과 관련한 직업적인 접촉을 1년~5년 또는 영구히 금지 가능
  - 다만 동물학대자의 양육의 권리 등을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도록 절차에 대한 고민 필요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동물자유연대

감사합니다.

토론 ⑤

동물등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